영주가흥 더리브 스위트엠 | 오피스텔 입주자모집공고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 건축과 - 1859호(2019.01.21)로 분양신고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4호 "업무시설"에 해당 함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I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차대수 : 총 143대(지하2~3층에 설치)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690-1번지 일원 ■ 실사용 대지면적: 25,016.00㎡(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포함한 전체면적)

■ 전체연면적: 157,829.6865m²(오피스텔 연면적: 15,886.0922m²) ■ 공급규모 : 오피스텔 지하 3층, 지상 18층, 1개동, 총 116실

■ 입주예정일: 2021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응급면적 및 응급규모					(단위 : m², 질)					
T-11-1				실별 계약면적						
주택형 (타입)	약식 호실수 표기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니 ᆸ)	亜/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소계	계약면적	
71.0470A	71A	84	71.0470	26,2107	97.2577	4.0718	35.1052	39.1770	136,4347	20.9372
71.9647B	71B	32	71.9647	26.6516	98.6163	4.1243	35,5587	39,6830	138,2993	21.2077
※ 주택공급 시청 시 [주택형] 또는 [형]라우 인주자모진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나 펼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인이 박생되지 않도로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반병을 졸저이 펼형 대시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버림처리 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50%)						
	공급	동 (라인)	층	해당 실수	공급금액			계약금(10%)	1회 2회 3회 4회				5회	잔금(40%	
	실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2019.05.25	2020.02.25	2020.08.25	2020.12.25	2021.04.25	입주지정 기간내
			3~4층	2	20,407,700	175,993,000	17,599,300	214,0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85,600,00
			5층	1	20,598,200	177,638,000	17,763,800	216,0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86,400,00
		108동	6~8층	3	20,979,200	180,928,000	18,092,800	220,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88,000,00
		1호	9~11층	3	21,265,500	183,395,000	18,339,500	223,0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89,200,00
			12~14층	3	21,551,800	185,862,000	18,586,200	226,0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90,400,00
			15층이상	4	21,838,100	188,329,000	18,832,900	229,0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91,600,00
			2층	1	20,217,200	174,348,000	17,434,800	212,0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84,800,0
			3~4층	2	20,502,400	176,816,000	17,681,600	215,0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86,000,0
			5층	1	20,694,000	178,460,000	17,846,000	217,0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86,800,0
		108동	6~8층	3	21,075,000	181,750,000	18,175,000	221,0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88,400,0
		4호	9~11층	3	21,361,300	184,217,000	18,421,700	224,0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89,600,0
			12~14층	3	21,647,600	186,684,000	18,668,400	227,0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90,800,0
			15층이상	4	21,932,800	189,152,000	18,915,200	230,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92,000,0
			2층	1	20,311,900	175,171,000	17,517,100	213,0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85,200,0
			3~4층	2		177,638,000	17,763,800	216,0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86,400,0
			 5층	1		179,283,000	_	-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87,200,0
		108동	6~8층	3	21,170,800	182,572,000	-	-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88,800,0
71A	84	5호	9~11층	3		185,040,000		-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90,000,0
			12~14층	3		187,507,000		-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91,200,0
			15층이상	4		189,974,000		231,0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92,400,0
			2층	1		175,993,000		214,0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85,600,0
			 3~4층	2		178,460,000		-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86,800,0
			5층	1		180,105,000	<u> </u>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87,600,0
		108동	6~8층	3		183,395,000		-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89,200,0
		3호	9~11층	3	 	185,862,000	 ' '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90,400,0
		108동 2호	12~14층	3	21,838,100	188,329,000	-	-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91,600,0
			15층이상	4	<u> </u>			232,0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92,800,0
			2층					215,000,000		21,500,000				21,500,000	
			3~4층	2		179,283,000		218,0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87,200,0
			5층	1	-			220,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88,000,0
			6~8층	3	21,361,300	184,217,000	- 	224,0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89,600,0
			9~11층	3	21,647,600	186,684,000	-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90,800,0
			12~14층	3	21,932,800		<u> </u>	230,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92,000,0
			15층이상	4	22,219,100	191,619,000	19,161,900	233,000,000	23,300,000	23,300,000	23,300,000	23,300,000	23,300,000	23,300,000	93,200,0
			2층	1	-	177,638,000	-	216,0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86,400,0
			 3~4층	2	<u> </u>	180,105,000	<u> </u>	219,0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87,600,0
			5층	1		181,750,000	18,175,000	221,0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88,400,0
		108동	6~8층	3		185,040,000	-	-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90,000,0
		6호	9~11층	3	_	187,507,000		-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91,200,0
			12~14층	3		189,974,000	_	-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92,400,0
			15층이상	3			-	234,0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93,600,0
71B	32		2층	1		178,460,000	1	-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 ² 등 3∼4층	2		180,928,000	-	-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1,700,000	22,000,000	86,800,0
			5층	1		182,572,000		-	22,000,000	22,200,000	22,000,000	22,000,000	22,200,000	22,200,000	88,800,0
		108동	⁵ 등 6~8층	ر ا			_	-		-					
		7호		3		185,862,000	-	-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90,400,0
			9~11층	3		188,329,000	1	-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91,600,0
			12~14층	3			-	232,0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92,800,0
			15층이상	3		[193,264,000] 차이가 있습니		235,0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94,000,

※ 오피스텔의 타입별, 층, 향, 구조 등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실별 정확한 분양금액은 오피스텔 공급안내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이 타입,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펌프실, 전기/발전기실,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MDF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사업주체)는 대지소유권 100% 확보했음. (단, 신원미확인자 공탁)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ELEV홀, 계단실, 부대시설, 복도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분양금액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오피스텔의 분양 중도금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법인계약, 2호실계약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지를 지분별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연체료 및 대출이자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보다 선순위로 변제 합니다.

● 수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1.0470A	71.9647B		
	약식표기 주택형	71A	71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록/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1.21)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는 타입별 최저가와 최고가로 공고하오니 청약 신청시 필히 견본주택에서 호수 및 분양가를 확인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한 호실에 대하여는 당사에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당사 견본주택 방문청약으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인터넷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청약일정 및 장소	2019년 01월 25일(금) 09:00 ~ 11:00 / 견본주택		
당첨자발표일 및 장소	2019년 01월 25일(금) 12:00 / 견본주택		
계약일정 및 장소	2019년 01월 25일(금) 13:00 ~ 18:00 / 견본주택		

당첨자선정 및 층호수 결정 방법

• 청약접수장소에서 무작위 추첨 결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발생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청약시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내 비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오피스텔 청약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1통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증(청약신청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 명의)
법인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내 비치) 법인 인감증명서(용도: 오피스텔 청약신청용) 1통 및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법인 대표이사 본인 청약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직원 및 대리인 청약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증(청약신청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1부(청약신청 법인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위임양식은 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1,000,000원 청약신청계좌 무통장 입금 351-1046-0049-63 대한토지신탁(주) • 상기 재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1.21)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시 청약신청금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당첨시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될 수 있으며, 미당첨시 기납부한 청약금은 환불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금 화불

#, 07C00 C2					
환불일정	환불방법				
계약기간 만료일이후 금융기관 영업일기준 14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청약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자동이체(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가능) ※ 환불신청 계좌오류 등 송금불능 사유발생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시 계좌오국은 및 환불불가 계좌의 제출로 인한 환불지연 미지급등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환불계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환불기간은 금융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2019년 01월 25일(금) 13:00 ~ 18:00 •계약체결장소: 영주가흥 더리브 스위트엠 견본주택(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505-1번지)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51–1046–0049–63	 대한토지신탁(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시에는 비고란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명 및 동호수는 7자리로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 → 홍길동1010101)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관리)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관리)주체에서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분양사업자 및 위탁사,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계약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1통 및 설계변경동의서 첨부용 1통) 2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2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법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계약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 법인 사업자등록증 1통 • 법인 인감증명서(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1통, 설계변경동의서 첨부용 1통) 2통 및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2통)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 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외국법인일 경우: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에 양식 비치) • 대리인 인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재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1.21)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신청 시 당사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당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되,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 · 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 부담이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 후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대출기관 : 대출관련 세부일정 및 내용은 당사 분양사업장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액 : 납부금액 중 중도금납입분에 한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총 분양대금의 50%이내(중도금 1차~5차)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 등의 사유로 비율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 계약자는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회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 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국인 및 법인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신청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고,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의 최초일 전일까지 당사에서 대납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미납시 또는 중도금 1회차 이상을 납부한 후 계약해지 시 당사에서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법인 명의로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이 경우 중도금 무이자 적용이 불가하오니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청약 및 계약은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추후 이로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이외의 지역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 10% 완납이후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합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2021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사용승인)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Ⅵ. 추가 선택 품목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은 시공사 (주)이테크건설과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을 진행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LG)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세 포함)	
에이크 서를 되어서					제.	조사 : LG		
주택형	설치개소	에어컨설치 적용실 (실내기)	설치모델명	구 분	금 액	계약금(10%)	잔 금(90%)	비고
		(글네기)		十 世	- i	계약시	입주지정일	
71A	0-11.1		제조사: LG RNW0720C2SP(거실)	일반형	3,043,000	304,300	2,738,700	
71B	2개소	거실(1개소)+침실1(1개소))+침실1(1개소) RNW0230C2SP(침실1) 무선리모컨 (실내기 동일)		3,330,000	333,000	2,997,000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매립배관 항목에 대한 설치 비용이 감액 하여 반영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거실, 침실1의 냉매매립배관 기본 사항은 설치가 제외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회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햄[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2동 1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0103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재 불가]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1-153810	(주)이테크건설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 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옵션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실외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 / 비확장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외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 세대내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콘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아니함, 냉매박스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제1항과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

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별도계약 품목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Ⅲ. 유의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기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법=형별 면적(m²)×0.3025)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실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 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를 확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의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 이후 주소변경(전자주소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득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득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하며,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의 명칭 및 호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관련 행정기관의 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판매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임.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6호, 2015.04.30.)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승강기 이용 계획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승강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수 없음.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인허가 조건 변경, 각종 인증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본인증을 위한 변경사항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 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CG조감도, 투시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특기시방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인허가청 및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인정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 시공 기준에 따름 •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실 시공 시 입면디자인(도장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몰딩, 창호, 판매시설, 커뮤니티, 옥탑장식물, 각종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임의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음

• 착공 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을 •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물(이동식 가구)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 관리 및 운영하 여야 함. • 일조, 통풍, 채광, 조망권은 층별, 실별로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단지계획상 오피스텔(108동) 남/동/서측으로 아파트(101~107동)이 위치하고 있어, 계약자는 해당 층/호수의 일조권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실은 입간판, 항공장애 등 브랜드 광고 간판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분양사업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분양사업자 변경 시 입주자(당첨자 등 포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면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채등), 오피스텔 단지명 사인물,동현관, 지하출입구, 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등 외부시설물 등의 위치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사업지 주변여건에 따라 항공기 및 도로, 교통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료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는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된 항공기소음 노출지역으로 그에 따른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사생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 배치 특성상 시각적 간섭, 소음, 바람, 일조권 간섭 등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내외부 조경,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함.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함,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또는 이전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해당법령에따라 관련 세금(취득세 등)이 중과 또는 가산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외부창호는 추후 본 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색상, 두께, 사이즈, 프레임 위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승강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청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 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함.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 (디지털 도어록 / 말발굽 등) 의 임의설치 /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ㆍ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 · 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 · 외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 ·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본 오피스텔의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2017.5.23., 일부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 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고,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개발계획(변경 포함)에 따른 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 · 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근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외부인 통행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인접단지 등 각종 기반시설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대지와 인접한 공지 및 공공시설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관계 인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주변 공원 및 단지의 공사로 인하여 각종 소음 및 먼지 발생, 조명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의 모형조형물에 표시된 당해 사업지 외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의 상업시설로 인하여 주말 교통 혼잡 및 소음과 통행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풍압 및 풍량으로 인한 소음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 개방되는 공간으로 동선상에 불편함 및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계약자들의 요구로 건축 및 조경 및 시설물, 환경색채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은 하나의 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층 공용 옥외공간의 녹지 및 조경공간은 추후 미관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기둥이나 벽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지하층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천창, D/A)이 지상층에 설치되며,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하1층에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공용으로 설치 계획되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진출입구는 지하3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 본 건물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또는 심의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 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에 따라, 또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D/A, 천창, 상업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내 저층부 형태의 입면(상업시설, 조경석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상업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설치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전거보관소로 인해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상업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홀, 오피스텔 로비, 동출입구에는 CCTV카메라가 설치되며, 건축법 범죄예방설계기준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식재, 홈오토설비, 공용조명, 부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서 공동 부담하여야 함.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면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채 등), 오피스텔 단지명 사인물, 동현관, 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등 외부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전용면적 71B형만 설치되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도서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동질 또는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가전, 액세서리, 간접조명(배선 · 배관포함)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 건축물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 내 비치된 건축허가도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세대 내부에 한함

• 견본주택 창호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 형태 및 사양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위생수전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홍보물(카탈로그 및 팜플릿 등)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이미지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면적 및 구조 • 2014.12.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형별 면적(m²) × 0.3025)

• 면적은 소수점2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표현되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이 계획된 건축물로,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용도별 대지구획이 없는 공유토지로서 향후 개별 세대나 용도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유시설물과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오피스텔 입주자는 계약면적 외 상업시설은 별도의 공급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공급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 계획은 입실 후 관리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 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오피스텔 공용면적(계단실, 커뮤니티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본 건물의 구조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건물의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건물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시공시 마감 및 단열재 두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구 설치시 반드시 실측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설비 공간 등 각종 공용부 면적 등은 실시공시 현장 여건이나 인허가 과정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본 단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건축법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본 건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로비 및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 문양, 경비실, 외부시설물, 커뮤니티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1.견본주택, 2.준공도서, 3.사업승인도서, 4.도급계약서 순으로 정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의 각 면적 배분 (전용 및 각 공용면적 등) 및 운영방식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계약시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주거시설(판매시설)은 별도의 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후 설계변경 예정사항에 대해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상의 건물외관색채는 경관심의 및 건축허가도서에 기재된 계획안으로 작성되어 있음.

• 설계변경 및 경관심의의 인허가 조건 및 협의에 따라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건축물 높이, 난간, 세대간벽, 테라스, 냉각탑, 기타 구조물)은 변경이 될 수 있음.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층고 및 천장고는 구조 및 시공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음. •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별 외부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외부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오피스텔 내부 일부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 시 자외선 및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일부 가구 내부에는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변경될 수 있음.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 내 · 외부 조경, 단지 내 · 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일부세대는 공사중에 고품질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법정대개수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동일 브랜드의 타 사업지와 주차단위구획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없음. • 주차운용은 사업주체에서 관리하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층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각 세대별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상업시설의 총 주차대수는 67대로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음 • 상업시설 주차장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주차장과 출입구를 공유하여 이용시간에 따라 다소 혼잡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재활용보관창고는 지하1층에 1개소, 관리사무소는 지하1층에 1개소 계획됨 • 지하주차장 및 PIT 등의 공간에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을 위한 각종 설비 배관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마감은 분양홍보물(모형 및 CG)을 참고하시기 바람. • 복도에 설치된 채광창의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배연창과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외관 디자인 계획상의 요철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외벽 일부가 돌출되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 등은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상업시설, 최상층 세대, 옥상층과 인접한 세대, 비확장세대, 필로티세대 등 상,하부 세대와 상이한 타입 세대 및 좌, 우 세대와 상이한 타입의 세대는 조망,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며,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과 인접하여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 내부에 소방법령에 따른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및 취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설비,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나 형태 등은 추후 결정되는 사항임.

• 단지내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개폐기가 설치될 수 있음.

•로비, 승강기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기타 설계상 주요 고지사항(오피스텔) ■단위세대 (향, 조망, 소음 등 환경권)

• 동조합은 중복도로 계획되어있어 채광 및 환기가 부족할 수 있음.

될 수 있습니다.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오피스텔은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계되었음. • 저층 세대는 단지주변도로, 조경시설물(벤치 등), 지하주차장 출입구, 커뮤니티시설, 옥외 가로등, 주변 녹지의 식재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눈부심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층별 타입이 상이하여 해당 세대의 실과 면하는 상, 하부층에 주방, 욕실, 발코니, 복도 등이 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가구 및 마감) • 계약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가 별도 설치하고자 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세대내 위치에 따라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 내부 가구설치, 은경설치로 인한 비 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마감 없습니다. • 호실 내부 욕실, 현관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피난방향에 따른 현관문 개폐방향은 좌우 호실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계약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 위치에 따라 일부 결로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고려(환기 등)가 필요함.

•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등),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모델하우스에는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동조합의 위치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도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위생도기, 수전, 욕실 악세사리 등의 제품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수량이 변경

■ 단위세대 (기타사항) • 몰딩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람. •본 공사시 층별 타입이 상이하여, 해당 세대의 각실 발코니, 천장 등 시공성 및 기타 성능여건으로 인해 벽체, 슬라브 형태 및 종류, 마감, 층고, 천장고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한함. •실제 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시공될 수 있음.

• 같은 형이라도 각 세대별 인접한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유의 바람. • 외기와 실내 온도차이가 클 경우, 충분한 환기가 부족할 경우 실내외 벽체에 결로 또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람.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전등, 전열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견본주택에 따르며,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타입에 공용 설비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이삿짐은 당 건물의 특성상 지하주차장을 통해 각동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업차량의 통행은 2,7m(지하1층에 한함, 기타층 2,3m)의 높이 이하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높이로 시공되며 이삿짐 차량일부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수인할 것. 단지배치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동일 타입의 단위세대라도 배치여건,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일조량, 소음, 조망권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해당 호수 및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일부 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또는 준공시 계약자 모집을 위하여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주방가구, 붙박이장류 등 하부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주방가구 일부공간은 온수분배기, 자동식소화기, 렌지후드배관 등의 설치로 수납공간의 사용이 불가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내천장 내에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천장 점검구 및 환기구가 설치되며 기계식 환기장치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오피스텔 상부옥외공간에는 배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취기가 발생할 수 있음. • 호실 천장 내부에 상부호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발코니에 소방, 배수, 에어컨 배관 등이 일부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의 개폐방식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천정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환기디퓨져, 가스배관 및 드레인 계량기 및 선홈통 위치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에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한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의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2동 지하1층, 옥외(판매,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주변)에 비상 발전기의 매연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됨으로 이로인한 사생활,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함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용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내진설계범주 C등급 적용함

• 지진력 저항시스템은 내력벽시스템(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적용함 • 내진능력(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MMI 등급)	본 건축물 내진능력 등급			
0.002 이상 0.004 미만	I				
0.004 이상 0.008 미만	II				
0.008 이상 0.017 미만	III				
0.017 이상 0.033 미만	IV]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rac{2}{3}$ $ imes$ S $ imes$ I $ imes$ Fa			
0.033 이상 0.066 미만	V] - S: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0.066 이상 0.133 미만	VI] 8 : 서년부탁에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0.133 이상 0.264 미만	VII] ' · · · · · · · · · · · · · · · · · ·			
0.264 이상 0.528 미만	VIII				
0.528 이상 1.050 미만	IX] - 응답 스펙트럼 방식으로 적용된 최대 지반가속도(g)는 0.176이며, 이에 따라 내진능력(MMI등급) Ⅶ등급임.			
1.050 이상 2.100 미만	X				
2.100 이상 4.191 미만	XI				

4 191 이상 ■공통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위치모형,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CG 등 카탈로그, 팜플렛, 각종 인쇄물 등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대한지적공사의 확정측량에 따라 경미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고속도로), 소음(항공소음 포함),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재 여건상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도로, 하수, 가스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마감재 등은 계약자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서 선택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주차 공간 이용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본 사업)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제조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승인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 단지내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매각시설로서 매각주체와의 협의 에 따라 해당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 계획의 변경 및 매각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위탁사는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시 위탁사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주민등록등본 포함) 당사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대상인 건축물은 관련법률에 의거 시행자 대한토지신탁(주)와 위탁자인 (주)중흥개발간에 2018년 01월 29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입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공동주택, 판매시설로 복합화된 건축물임 •본 건축물은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건축물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수 없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계약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당하거나(해제시 위약금 부담) 소정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함. • 분양가에 포함된 가구는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임. (가구 사이즈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가에 포함된 가전제품은 홈오토, 도어폰, 디지털도어록, 3구가스쿡탑, 전기후드임.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본 건축물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는 발생하는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Ⅷ. 기타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지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입니다.

보증서 번호

제 01282019-104-0000200 호	₩ 15,673,8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사용검사 또는 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ㅇ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원)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 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ㅇ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보증채권자 전부의 실제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복리시설부분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보증채권자에게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준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ㅇ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지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합니다)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합니다.)를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열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박색하거나 증가된 채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청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겸 수탁자	위탁자	시공사
상 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흥개발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삼성동, 아셈타워)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87번길 22-3(가흥동)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송암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75611-0014519	110111-0327555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중흥개발는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중흥개발이고,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함. •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대한토지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중흥개발 및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임.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 및 위탁자가 부담하고 대한토지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대한토지신탁(주)가 매수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겸 수익자 (주)중흥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주)중흥개발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함.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 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505-1번지 ■ 분양문의 : ☎ 054-631-8245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helivsweetm.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대한토지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054) 631-8245